C - 45 - 2012

- (3) 지질, 암의 절리 등에 따라 화약량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시방기준과 대비하여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(4) 발파책임자는 모든 근로자의 대피를 확인하고 지보공 및 복공에 대하여 필 요한 방호조치를 한 후 발파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(5) 발파시 안전한 거리 및 위치에서의 대피가 어려울 때에는 전면과 상부를 견고하게 방호한 임시대피장소를 설치하여야 한다.
- (6) 화약류를 장진하기 전에 모든 동력선 및 활선은 장진기기로부터 분리시키고 조명회선을 포함한 모든 동력선은 발원점으로부터 최소한 30m이상 후 방으로 옮겨 놓도록 하여야 한다.
- (7) 발파용 점화회선은 타동력선 및 조명회선으로부터 분리하여야 한다.
- (8) 발파전 도화선 연결상대, 저항치 조사 등의 목적으로 도통시험을 실시하여 야 하며 발파기 작동상태를 사전 점검하여야 한다.
- (9) 발파 후 30분이상 경과한 후 접근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의 조치를 취한 후 다음 단계의 작업을 행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(가) 분진 및 유해가스의 농도를 측정하고 노동부고시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 자의 노출기준에서 정하는 노출기준(이하 "노출기준"이라 한다) 이하가 되도록 신속히 환풍기, 송풍기 등을 이용하여 환기시킨다.
- (나) 발파책임자는 발파후 분진 및 유해가스 배출 완료 즉시 굴착면을 세밀히 조사하여 붕락 가능성의 뜬돌을 제거하여야 하며 용출수 유무를 동시에 확인하여야 한다.
- (다) 발파단면을 세밀히 조사하여 필요에 따라 지보공, 록볼트, 철망, 뿜어붙이 기 콘크리트 등으로 보강하여야 한다.
- (라) 발파공 및 버력 속에 남아있는 불발화약류의 유무를 세밀히 조사하여야 하며 발견시 안전한 방법으로 잔류화약을 처리하여야 한다.
- (10) 화약류는 동결되지 않도록 보관하고 동결된 화약류는 상온에서 완전히 해동한 후에 취급, 사용하여야 한다.